



즉시 배포용: 2020년 8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 관련 상업 퇴거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9월 20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주거 및 상업 임차인을 퇴거 및 임대료 체불로부터 보호하려는 주지사의 조치의 연장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 관련 상업 퇴거 및 담보권 행사에 대한 주정부의 모라토리움을 9월 20일까지 추가 한 달 연장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매 시설 및 레스토랑을 포함한 비즈니스 소유주에게 팬데믹이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업 임대자 및 주택 담보 대출자를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보호 조치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의 확대에 따라 상업 임차인 및 주택 담보 대출자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하여 임대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임대 조건을 재협상하고 퇴거 절차 및 담보권 행사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낮은 감염률을 유지하는 데 우리는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이번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계속 싸우는 한편,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의 기업 및 주거 임차인을 계속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뉴욕의 비즈니스 소유자가 팬데믹으로 인해 폐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업 퇴거에 대한 주정부의 모라토리움을 확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먼저 심각한 공공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임차인이 퇴거 당하지 않도록 주거 및 상업 퇴거에 대하여 3월 20일까지 주정부 모라토리움을 발표했습니다. 상업 퇴거 및 담보권 행사 모라토리움은 행정 명령에 의해 8월 2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주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를 담보권 행사 또는 퇴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 세이프 하버법(Tenant Safe Harbor Act)과 추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주거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 추가 비용을 내지 않도록 추가 보호 조치를 명령하여, 임차인들이 주거 시설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